

의안번호	2202008
의 퇴 인	한정애의원
회 답 일	2024. 07. 31.
추 계 번호	24D08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안 제121조제3항에 따라 선거사무장 등의 고용보험 가입 시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8억 5,600만원, 2028년 국회의원선거 시 2억 5,9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4억 2,700만원(연평균 7억 1,4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지선)	2027 (대선)	2028 (국선)	2029	합 계	연평균
선거사무장 등의 고용보험 가입비용의 선거비용제한액 가산 (안 제121조제3항)	—	856	312	259	—	1,427	714

주: 1. 선거사무장 등의 고용보험 가입비용의 선거비용제한액 가산(안 제121조제3항)은 의무규정 재정수반요인

2. 각 공직선거별로 직전 선거 시 선거사무장 등의 인원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21조제3항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 및 회계책임자(이하 '선거사무장 등')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총 고용보험료 중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여야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121조제3항 (선거비용제한액의 산정)	○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에서는 공직선거별 선거사무장 등 인원이 직전의 동일 공직선거에서의 인원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가 있는 2026년(전국동시지방선거), 2027년(대통령선거), 2028년(국회의원선거)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보궐선거는 추계에서 제외하기로 함
-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고용보험료율은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
-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개정안은 선거사무장 등의 고용보험료(사업주 부담)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여 해당 금액 만큼 선거비용보전액이 증가하므로 추가재정소요 발생
- 본 추계에서는 개정안에 따라 선거사무장 등의 고용보험 가입 시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 총액을 산출
 - 고용보험료 총액은 수당, 인원, 선거운동기간, 고용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출
 - (수당) 공직선거 시 선거사무사무장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현행법 제135조제2항¹⁾에 따라 선거사무 종류별로 14만원, 10만원, 6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추계기간 동안 동일한 것으로 가정
 - (인원) 14만원, 10만원, 6만원 수당별 인원은 직전 공직선거 시의 인원과 동일한 것으로 가정하면 2026년 총 85,885명, 2027년 19,315명, 2028년 27,637명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 공직선거별 선거총람과 제출자료를 근거로 수당 금액별로 지급대상 인원을 추려내어 작성

1)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①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선거사무장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사람이 회계책임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을 함께 맡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한다.

1. 대통령선거및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의선거사무장:14만원 이내
2.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와시·도지사선거의선거사무장, 대통령선거의시·도선거연락소장:14만원 이내
3. 지역구국회의원선거및자치구·시·군의장선거의선거사무장, 대통령선거및시·도지사선거의구·시·군선거연락소장:10만원 이내
4. 지역구시·도의원선거및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선거사무장, 지역구국회의원선거및자치구·시·군의장선거의선거연락소장: 10만원이내
5. 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6만원이내
6. 회계책임자:해당회계책임자가소속된선거사무소또는선거연락소의 선거사무장또는선거연락소장의수당과같은금액

[표 2] 수당별 지급대상 선거사무관계자 인원

구분	2026 (지선)	2027 (대선)	2028 (국선)
14만원 수당 지급 대상	1,509	31	69
10만원 수당 지급 대상	11,285	1,765	1,634
6만원 수당 지급 대상	73,091	17,519	25,934
합계	85,885	19,315	27,637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각 공직선거별 선거총람과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선거운동기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선거는 13일, 대통령선거 22일
 - (고용보험료율) 선거사무장 등의 사업주는 의원실, 정당 등이므로 150명 미만 사업자로 가정하여 고용보험료율 1.15% 적용
- 추계결과, 개정안에 따라 선거사무장 등의 고용보험 가입 시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선거비용제한액에 가산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시 8억 5,600만원, 2028년 국회의원선거 시 2억 5,9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14억 2,700만원으로 예상

[표 3] 선거공보 수어영상 제작에 따른 소요비용 추계: 2025~2029년

구분		2025	2026 (지선)	2027 (대선)	2028 (국선)	2029	합계
인원 (명)	14만원 수당 지급 대상(a)	—	1,509	31	69	—	—
	10만원 수당 지급 대상(b)	—	11,285	1,765	1,634	—	—
	6만원 수당 지급 대상(c)	—	73,091	17,519	25,934	—	—
	선거운동기간(d, 일)	—	13	22	13	—	—
추가재정소요 (= $\{14\text{만원} \times a + 10\text{만원} \times b + 6\text{만원} \times c\} \times d \times 1.15\%$, 백만원)		—	856	312	259	—	1,42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직전 공직선거의 후보자 수 등을 활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nabo.go.kr